

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호	22-93
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근 거
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필요성 :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(위기)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제고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현황

구 분	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	
소재지	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1층(망원동)	
규모	226.23㎡	
시설설비	사무실(1), 상담대기실(1), 집단상담실(1), 개인상담실(3), 교육실(1)	
센터 전경 및 위치		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 (2023. 1. 1. ~ 2025. 12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사. 소요예산

○ 총사업비: 1,500,850천원(국비 10%, 시비 22%, 구비 68%)

(단위: 천원)

구 분	합계	인건비*	사업비	운영비**	비 고
합 계	1,500,850	1,219,600	115,290	165,960	
2023년	494,250	400,500	38,430	55,320	인건비 상승률 반영
2024년	500,250	406,500	38,430	55,320	"
2025년	506,350	412,600	38,430	55,320	"

* 인건비 산정 : 센터장1명, 팀장2명, 팀원3명(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)

** 운영비 내역 :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기타운영비 등

<참고>

구 분	합계	인건비	사업비	운영비	비 고
2022년	484,000	385,250	38,430	60,320	

아. 산출근거

-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
[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-20347(2021.12.14.)]
- 2022년 구립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
[아동청년과-24330(2021.12.24.)]
- 2022년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예산(안)검토
[아동청년과-1309(2022.1.17.)]

자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 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- 청소년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고,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청소년안전망 및 상담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나. 기타사항

- 추진일정안
 - 2022. 10. 17. ~ 10. 28. :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신청서 접수
 - 2022. 11. 4. ~ 11. 10. :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
 - 2022. 11. 18. : 위탁계약 체결

[관계법령]

○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점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>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8.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1.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점검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3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